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

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육영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육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2월 1일

발 의 자 : 강수진, 고영옥, 권영애, 김육영,
소형준, 오중균, 이용진, 이인순,
임현주, 정병기, 정윤주, 정해숙,
진선아

1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
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원칙을 규정함(안 제4조의2)

나.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
정함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8항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4. 2. 2. ~ 2024. 2. 6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구축”을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)”를 “(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가대상 기관”을 “평가대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관이”를 “업체가”로, “대행기관”을 “대행업체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매년도”를 “매년”으로, “기관”을 “업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”를 “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평가원칙)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평가는 현장평가, 서류평가, 주민만족도평가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

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기관”을 “업체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평가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기관”을 “업체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기관의”를 “업체의”로, “평가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기관의”를 “업체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관”을 각각 “업체”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응하여야”를 “따라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서울시”를 “정부 또는 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평가위원회의 설치)”를 “(생화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“평가위원회””를 ““위원회”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평가위원회의 기능)”을 “(위원회의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평가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평가위원회 구성)”을 “(위원회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가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분야 경험공무원”을 “관련 5급 이상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명”을 “3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2명 이내”를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”를 “(위원회 위원장의 직

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, 평가위원회”를 “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평가위원회 회의운영)”을 “(위원회 회의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“평가위원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평가위원회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, “평가위원회에”를 “위원회에”로 한다.

제15조 본문 중 “평가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기관”을 각각 “업체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관”을 각각 “업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<u>구축</u> 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	-----	

			-----	<u>마련</u> -----

제3조(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) ①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<u>평가대상 기관</u> 이 된다.		제3조(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) ①	-----	

			-----	<u>평가대상</u> -----

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<u>기관</u> 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, 근무복 제공,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<u>대행기관</u> 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.		②	-----	
		<u>업체가</u>	-----	

			-----	<u>대</u>
		<u>행업체</u>	-----	

제4조(평가지침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		제4조(평가지침) ①	-----	

한다)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, 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제5조(평가계획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4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

----- 매년 -----
----- 업체 -----
-----.

② -----
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평가원칙)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평가는 현장평가, 서류평가, 주민만족도평가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
제5조(평가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평가대상 기관

3. ~ 5. (생략)

제6조(평가의 실시)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.

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,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,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자료의 요청 등)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업체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평가의 실시) ① -----
----- 따라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위원회 -----

----- 업체 -----
----- 업체의 -----
----- 위원회 -----

----- 업체의 -----

-----.

제7조(자료의 요청 등) ① -----

----- 업체 -----
-----.
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평가대상 <u>기관</u> 의 현지조사 등	3. ----- <u>업체</u> ----- --
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<u>기관</u>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<u>응하여야</u>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업체</u> ----- ----- <u>따라야</u> -----.
③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경우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<u>서울시</u> 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정부 또는 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.
제9조(<u>평가위원회의 설치</u>)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(이하 “ <u>평가위원회</u> 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9조(<u>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설치</u>) -- ----- ----- “ <u>위원회</u> ”----- -----.
제10조(<u>평가위원회의 기능</u>)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·의결 한다.	제10조(<u>위원회의 기능</u>) <u>위원회</u> 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<u>평가위원회 구성</u>) ① <u>평가위원회</u>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11조(<u>위원회 구성</u>) ① <u>위원회</u> -- ----- ----- -----.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	② -----

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구의 청소·환경업무 분야 경험공무원 3명 이내
2. 청소·환경 관련 단체 및 주민 2명 이내
3.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소·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
4. (생략)
- ③ (생략)

제12조(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,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(생략)

제13조(평가위원회 회의운영)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(생략)

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----.

1. -----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--
2. -----
-- 3명 --
3. ----- 2명
4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위원회 회의운영) ① -----
----- 위원회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회-----

-----.

제14조(간사 등)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구의 대행업무 수립·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5조(수당 등)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(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) ① 구청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

은 평가대상 <u>기관</u>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----- <u>업체</u>----- ----- ----- -----.
제17조(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 등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<u>기관</u>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<u>기관</u>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제17조(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업체</u>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업체</u>----- -----.